

회계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함(영 제5조의8 신설).

나.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회계 또는 재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계 및 재무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영 제37조의7제2항 신설).

다.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83조의15 신설).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로 임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영 제84조의24제1항, 동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 건 인

2004년 4월 1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현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1호중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을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4제2항제2호중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를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 3.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①주식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법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 관련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기관에서

2년 이상(동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⑧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법 제4조의2제4항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6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선임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의 과반수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2. 최근 6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감사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3. 기존 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감사보수를 공유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⑩법 제4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법령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을 감사하는 자와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을 선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법 제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런던증권거래소

제4조제4항제2호중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을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 “경우의 당해 회사”를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다만, 주권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으로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이 영 제4조제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4조제5항제1호”를 “이 영 제4조제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회계감사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중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을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신고 및 고지의 방법)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15조의3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2. 기업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그 기업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지하는 방법

제15조(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7조(금융기관)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8.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 그 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③(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부터 적용한다.
- ④(실무수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자는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2003. 12. 11, 법률 제6991호)되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외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상장·등록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상장·등록 예정인 법인으로 확대함(영 제2조제1항제2호 신설).
- 나.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예외 사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와 뉴욕·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로 정함(영 제3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 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신규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함(영 제4조제5항).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고 건 인
국 무 총 리

2004년 4 월 1 일

국 무 총 리 고 건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352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을“(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를 “제5조제2항”으로, “과목”을 “과목 및 과목별 배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